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시장·군수의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명령 요청 근거 마련 >
■ 정청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87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시장·군수의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명령 요청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2025년 7월 21일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7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홍수통제소로 하여금 환경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아 홍수 등 긴급한 상황이 우려될 경우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 하천 등을 접하고 있고, 하천 범람 시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갑작스런 폭우로 홍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위기에도 제 때 방류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하천이 범람하거나 마을이 수몰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하천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사전 방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적시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시장·군수의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명령 요청 근거 마련

개정안은 홍수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이 속한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이 댐, 하구둑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방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 (생략)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하천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u>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u>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	② ----- ----- ----- <u>하천이 속한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u> -- ----- ----- ----- ----- ----- -----

접 할 수 있다. ③ (생 략)	----- ----- --. ③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에서는 하천관리청(환경부장관 및 광역자치단체장)¹⁾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동 법 제39조²⁾에 따른 댐이나 하구둑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라 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중앙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1)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법 제39조(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 또는 하구둑 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유수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5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은 제외한다.

2. 하구둑

3. 하구 부근의 해수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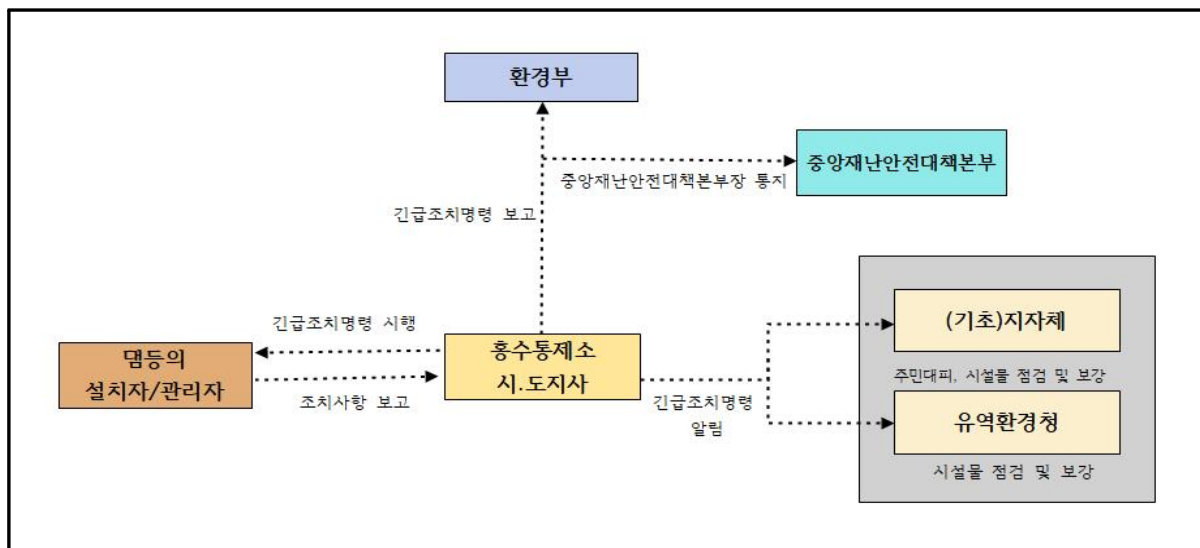
4. 운하

3) 법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하천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의 4개 홍수통제소장(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⁴⁾과 광역자치단체장은 홍수가 예상되어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목적댐, 발전용댐, 농업용 저수지 등을 각각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농어촌공사 등⁵⁾에 사전방류 등 긴급조치명령을 시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유역환경청에 알려 주민 대피 및 시설물을 점검하고 보강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련 명령 시행 내용을 통지하고 있음.

[표] 현행법상 홍수조절을 위한 (긴급)조치명령 체계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4) **법 시행령 제105조(권한의 위임)**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17. 법 제41조에 따른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에 관한 권한

5) 현행법상 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 설치 및 법적근거(법 제39조제1항 관련)

구 분		설치자/관리자	법적 근거
댐(1호)	다목적댐	한국수자원공사	댐건설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발전용댐	한국수력원자력(주)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 제5조
	농업용저수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법 제16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8조
하구둑(2호)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3호)			
운하(4호)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27호

그러나 실제 하천 등을 접하고 있고, 하천 범람 시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갑작스런 폭우로 홍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위기에,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도 제때 방류 등 긴급 조치를 요청할 권한이 없어 재해 예방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하천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이 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방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하천 범람이 예상되는 경우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어 현행 긴급조치명령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⁶⁾.

문 의 처

02)6788-5547

- 6)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반영되는 경우에도 긴급조치명령권자(국가하천: 홍수통제소장, 지방하천: 시·도지사)와 방류승인권자(홍수통제소장)의 변경이 없어 현행법상 긴급조치명령 체계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이 반영되는 경우의 긴급조치명령 체계도]

